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광고물의 종류	표시기간
1. 벽면 이용 간판	3년 이내
2. 삭제 <2016. 7. 6.>	
3. 돌출간판	3년 이내
4. 공연간판	2년 이내
5. 옥상간판	3년 이내
6. 지주 이용 간판	3년 이내
6의2. 입간판	3년 이내
7. 현수막	· 건물의 벽면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현수막: 1년 이내 ·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해당 공사의 공사기간 이내 ·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2개월의 범위에서 시장등이 정하는 기간 이내 · 그 밖의 현수막: 15일 이내
7의2. 현수막 게시시설	3년 이내
8.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경우: 60일 이내 · 옥상 또는 지면에 표시하는 경우: 3년 이내
9. 벽보	15일 이내
10. 전단	15일 이내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3년 이내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가. 철도차량, 도시철도차량,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선박, 항공기등(「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행선은 제외한다), 건설기계 및 대여자전거	3년 이내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비행선	30일 이내
14. 선전탑	30일 이내
15. 아치광고물	30일 이내
16.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3년 이내
17. 특정 광고물	3년의 범위에서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고

1. 게시시설의 표시기간은 그 게시시설에 표시되는 광고물의 표시기간에 따른다.
2. 위 표 제1호, 제3호, 제6호 또는 제6호의2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이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후 자사광고로 계속하여 사용하는 광고물등(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표시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